

# 망원유수지 체육시설(파크골프장, 소축구장, 소프트테니스장)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4. 10. 11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4. 9. 27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: 2024. 9. 30.
- 다. 상정일자: 제271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24. 10. 11.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체육진흥과장 최한중】

### 가. 제안이유

2024. 10월 말 개장 예정인 “망원유수지 체육시설(파크골프장, 소축구장, 소프트테니스장)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위탁사무명: 「망원유수지 체육시설(파크골프장, 소축구장, 소프트테니스장)」 운영사무
- 2)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(1) 추진근거
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5조(운영의 위탁)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

(2) 필요성

-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 선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구민 만족도 제고

3)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: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

- (1)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운영 및 인력 운용 관리 일체
- (2) 기타 위탁사무 수행에 수반된 사업 및 운영사무 일체

4) 민간위탁기간 : 2025. 1. 1. ~ 2027. 12. 31.(3년)

5)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관리 위탁

6) 위탁시설 개요

- (1) 위 치: 마포구 망원동 450-3번지 망원유수지 내
- (2) 시설규모: 연면적 12,850㎡
- (3) 시설현황

연번	구분	면(홀)	총면적(㎡)	이용료
1	소프트테니스장	1	740	유료
2	파크골프장	9(홀)	6,000	무료
3	소축구장	2	6,110	무료
소 계			12,850	

(4) 위치도



## 사. 소요예산: 비예산

### 아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1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전문적·능률성을 필요로 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음
- 2) 체육시설 운영·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으로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, 시설을 쾌적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

### 자. 민간위탁 추진일정

- 1) '24. 10월 : 민간위탁기관 선정 계획 수립
- 2) '24. 11월 ~ 12월 : 수탁기관 선정
- 3) '24. 12월 : 민간위탁 협약 체결
- 4) '25. 1월 : 위탁 운영 개시

## 3. 검토보고(전문위원 권하나)

- 본 동의안은 '망원유수지 체육시설(파크골프장, 소축구장, 소프트테니스장) 신규 민간위탁'을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민간위탁 조례”) 제5조제1항1)에 따라 사전에 마포구의회 동의 받도록 하는 것임.
- 망원유수지(망원동 450-3번지) 내 조성된 '망원유수지 체육시설'의 소프트테니스장(1면, 224평)은 2022년 3월부터 구에서 직영 운영(체육진흥과 체

1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5.6., 2023.3.9.>

육진흥팀) 중이고, 파크골프장(9홀, 1,815평) 및 소축구장(2면, 1,848평)은 올해 10월부터 개장할 예정임.

- 이에,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내 파크골프장, 소축구장, 소프트테니스장 운영을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 이는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5조2)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.
- 민간위탁의 주요 사무는 ①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운영 및 인력 운용 관리 ② 기타 위탁사무 수행에 수반된 사업 및 운영사무 등으로
- 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위탁사무는 “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”와 “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”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4조3)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자립형 위탁<sup>4)</sup>으로 운영할 예정이므로, 운영방식 측면에서 살펴보면,

2)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5조(운영의 위탁)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또는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5.4.16.>

③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위탁의 연장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4.16.>

3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4) **자립형(舊 수익창출형) 민간위탁:** 마포구의 예산지원 없이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위탁사무로서,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일정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인·단체 등에게 맡겨 그 명목과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

직영 운영방식은 망원유수지 체육시설의 직접 관리로 투명하게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운영할 수 있고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이용료 세외수입이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,

- 체육시설 운영 및 강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쉽지 않음.

〈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운영방식에 따른 비교 〉

구 분	직영 운영	민간위탁 운영
운 영 자	마포구(체육진흥과)	민간 수탁자
장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운영 가능</li> <li>• 체육시설 이용료 <u>세외수입 발생</u>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자립형 운영임에 따라 <u>시설관리 인력 및 시설정비 등 예산 절감</u></li> <li>• <u>다양한 프로그램</u> 운영으로 <u>구민 체육활동 촉진</u></li> <li>• 테니스 코트, 파크골프장, 축구장 등 <u>전문적 시설관리로 서비스 품질 제고</u></li> <li>• 관리·운영에 따른 기타 부대업무로 인한 행정소모 방지</li> </ul>
단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직원 순환보직에 따른 <u>전문성 부족</u></li> <li>• 전담 관리 <u>공무원 증원</u> 필요</li> <li>• 시설정비 등 <u>지속적 예산투입</u> 필요</li> <li>• 체육시설의 <u>전문적 운영에 한계</u>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u>과도한 수익성 중심 운영</u>으로 공익성 훼손 우려</li> </ul>

- 반면에, 민간위탁 방식의 경우 자립형 운영으로 인력 채용 등에 대한 예산이 절감되고 위탁운영자의 전문적인 운영관리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자칫 과도한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되어 공익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바,

-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운영은 전문적으로 관리·운영할 수 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하되 과도한 수익성 중심의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회계감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사료됨.

예) 망원유수지 풋살장, 초록숲데이케어센터 등

- 한편, 소프트테니스장은 기존처럼 유료로 운영하고, 신규 개장하는 파크골프장 및 소축구장만 전면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나, 시설관리비 및 타 종목시설과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〈 망원유수지 소프트테니스장 사용료 〉

사용료 (단위:원)			비고
주중	토·공휴일	월	
(주간)10,000 (야간)13,000	(주간)13,000 (야간)16,900	80,000 (16시간 이내)	※ 망원유수지 소프트테니스장 사용료 기준 - 1면 2시간

- 물론, 공공 체육시설은 수익성을 근간으로 하는 민간체육시설과 달리 구민 모두의 체육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구민 세금으로 조성돼 운영되는 공익적 체육시설임.
- 그러나 시설 노후에 따른 개보수 등이 제때 이뤄지고, 공공 체육시설을 더욱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사용자가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수익자 부담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임<sup>5)</sup>.
- 다만, 파크골프장 및 소축구장은 신규 개장인 만큼 한시적 기간을 정하여 무료로 시범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.
- 이와 더불어, 체육시설 이용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, 많은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## 5. 토론요지: 없음

5) 파크골프 열풍에도 매년 적자 '허덕'.....유료화 전환 속도: 제주매일(2024.6.10.)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8. 기 타: 없 음

**□ 민간위탁 대상사무****《 민간위탁 사무기준(조례 §4) 》**

◆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- ▶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- ▶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- ▶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- ▶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**○ 비권력적 시설관리 등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**

예) 폐기물·물 재생시설, 쓰레기소각장, 분뇨처리장 운영 등

**○ 비영리사회단체를 통해서 운영·관리가 효율적인 기능 등**

예) 사회복지시설, 청소년수련시설, 도서관, 박물관 등

**○ 민간이 운영할 경우 보다 활성화되는 기능**

예) 문화예술회관,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개방시설 등

**○ 민간이 더 우수한 전문기술을 갖춘 검사·조사기능**

예) 교량안전점검, 공사감리,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

**《 민간위탁 제한영역 》**

- ▶ 주민의 권리·의무 및 의식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무
- ▶ 법적 근거 등 합리적 사유가 없는 사회·공익서비스 분야의 사무
- ▶ 위탁 시 지나친 수익성 추구로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무
- ▶ 다른 법령 또는 조례 상 “위탁” 용어를 사용한 경우라도 실질적 의미가 민간위탁 개념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



## □ 민간위탁 유형

### ○ 예산지원형

#### - 시설형 위탁

- ▶ 마포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

예) 경의선책거리, 정신건강복지센터 등

- ▶ 마포구가 위탁한 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 수입으로 하는 협약체결이 가능함

※ 이용료: 수탁기관이 재산을 이용하는 자에게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(수영장 입장료, 문화회관 관람료 등)

- ▶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을 동시에 적용

- ▶ 개별사업 중 상위 법령에서 기본조례의 위탁기간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,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법령의 위탁기간 준수 필요(조례 §3)

예) 사회복지시설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, 「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우선 적용

예) 어린이집은 「영유아보육법」,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, 「마포구 보육조례」 우선 적용

예) 공유재산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,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(행정안전부 고시) 우선 적용

#### - 사무형 위탁

- ▶ 마포구의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수탁기관의 자기소유 또는 수탁기관 명의로 임차한 시설을 활용하여 그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

예)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등

○ 자립형(舊 수익창출형)

- 마포구의 예산지원 없이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위탁사무로서,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일정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인·단체 등에게 맡겨 그 명의로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

예) 망원유수지 풋살장, 망원나들목 테니스장, 초록숲데이케어센터 등

- 마포구의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
  - ▶ 기능보강과 같이 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항
  - ▶ 코로나19, 메르스 등 감염병 확산, 일본 원전사고, 국제유가 변동 등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적자누적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, 외부전문기관의 회계감사 등 객관적 근거 확보 시 지원 가능
    - ※ 수탁기관의 자구(自求)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직영 또는 예산지원형으로 전환 검토
-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시설위탁이 수반되므로 근거법령 등은 시설형 위탁과 동일하게 적용
- 수익창출 과정에서 자체 수입금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시설위탁 비용(인센티브) 지급 가능

## □ 신규 민간위탁 추진 절차

구 분	신규위탁(공개모집)	신규위탁(수의협약)	비고
① 사전조사와 적정성 검토	민간위탁 필요성과 기대효과, 운영사례, 수탁가능업체 등 사전 조사 민간위탁(시행사무)의 적정성 사전 검토		조례 §4
↓			
② 추진계획 수립	법적근거, 위탁사무 세부내용, 기간, 비용, 수탁자 선정방법 등		
↓			
③ 구의회 동의	<b>구의회 동의</b> ▶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(조례 §6①)		조례 §5
↓			
④ 예산 편성	<b>예산 편성</b>		조례 §6
↓			
⑤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	-	<b>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</b> ▶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▶ 수의협약 근거·사유 심의	조례 §7
↓			
⑥ 수탁기관 선정	<b>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</b> ▶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	-	조례 §11
↓			
⑦ 위·수탁 협약체결	위탁 협약 체결(위탁사실 공고)		조례 §13
↓			
⑧ 위탁사무 인계·인수 등	위탁사무와 시설 인계인수, 시범운영, 사무편람 작성과 비치		조례 §14, 20
↓			
⑨ 사후관리와 성과평가 등	▶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지도·감독: 필요 시 ※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에 한해 매년 2회(반기별 1회) 이상 ▶ 처리상황의 감사: 필요 시 ▶ 성과평가: 위탁기관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		조례 §14, 18, 21

**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**

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**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**

제4조(체육시설 관리·운영) ① 체육시설은 구청장이 관리·운영을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5.4.16>

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체육경기대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, 공정한 이용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5조(운영의 위탁)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또는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5.4.16>

③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위탁의 연장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4.16>

**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**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  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-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가능성
  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  3. 경제적 효율성
  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
  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  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  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

**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**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5.6., 2023.3.9.>

-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5.6.>
- ③ 1년 단위 이하의 반복적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. <신설 2021.5.6.>

**제6조(민간위탁 동의안 등)** ① 제5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명
  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  3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
  4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  5. 민간위탁기간
  6. 수탁자 선정방식
  7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  8.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  9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-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

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3.9.>

1. 인적·물적 현황
  2. 예산의 지원과 집행 내역
  3. 위탁 조건의 이행 수준
  4.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
  5. 사건·사고 현황
  6. 성과평가결과서
  7.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
- ③ 구청장은 구의회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재계약·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**제13조(협약체결 등)**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
  2. 위탁기간
  3. 위탁사무 및 그 내용
  4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 5.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조치사항
  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- ③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.

**제21조(성과평가)**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외부기관의 성과평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**제22조(재계약·재위탁 등)**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·재계약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.
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제18조의 지도·점검에 따른 시정결과와 제21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